

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61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7. 09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실납세자 선정대상(안 제2조)
- 나. 성실납세자 선정방법(안 제3조)
- 다. 성실납세자 지원내용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세법」 제2조, 제3조, 제5조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08월 18일 ~ 09월 06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관련 협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의견없음

- 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-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

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정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·개인으로서 한다.

1. 법인 :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(이하 “지방세”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으며,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1억원 이상 전액 납부한 직장
2. 개인 :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,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5천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

제3조(선정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선정대상자 중 세정과 장의 추천을 받아 「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.

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4조(인증 등)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,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.

제5조(납세자등의 지원)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
2. 하남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
3.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
4.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, 예금금리 우대,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사후관리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. 다만, 선정 이후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부서명 | | 세정과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입안자 | 부서장 직위·성명 | 세정과장 박건석 |
| | 팀장 직위·성명 | 세정팀장 이상렬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 | 이상렬 (790-6184) |

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□ 지방세기본법 제1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)

제1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
 2.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 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 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